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1-14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

판 결

사 건 2020가단5425 배당이의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1. [redacted]군

소송대리인 B, C, D

2. [redacted]시

소송대리인 E, F, G, H

3. [redacted]

변론종결 2020. 11. 10.

판결선고 2020. 11. 24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군, [redacted]시에 대한 소 및 피고 [redacted]국에 대한 소 중 130,412,29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.

2.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1-14

청 구 취 지

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그 법원이 2020. 2. 2.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2,967,599원으로, 피고 [redacted]군에 대한 배당액 931,850원을 0원으로, 피고[redacted]국(소관 : [redacted]세무서)에 대한 배당액 7,136,760원을 0원으로, 피고[redacted]시에 대한 배당액 9,248,260원을 0원으로, 피고[redacted]국(소관 : [redacted]세무서)에 대한 배당액 130,412,2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J 소유의 [redacted]군 K 임야 10446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)에 관하여 2017. 11. 2. 채권최고액 150,000,000원, 채무자 J,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 법원은 2020. 2. 20.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, 피고 [redacted]군에 대한 배당액을 931,850원, 피고 대한민국(소관 : [redacted]세무서)에 대한 배당액을 7,136,760원, 피고[redacted]시에 대한 배당액을 9,248,260원, 피고 대한민국(소관 : [redacted]세무서)에 대한 배당액을 130,412,290원으로 하는 배당표(이하 '이 사건 배당표')를 작성하였다.

다. 원고는 2020. 2. 20.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(소관 : [redacted]세무서)에 대한 배당액 130,412,29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였다.

원고는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0. 2. 25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5, 변론 전체의 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1-14

2. 피고[redacted]군, [redacted]국(소관 : [redacted]세무서), 피고[redacted]시

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배당이의 소의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고(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등 참조),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(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등 참조).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.

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2020. 2. 20.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(소관 : 남양주세무서)에 대한 배당액 130,412,29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하지 않은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.

3. 피고 대한민국(소관 :[redacted]세무서)

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(소관 :[redacted]세무서)의 조세채권에 우선하거나, 위 조세채권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,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로 판단한다(국세기본법 35조 제1항).

갑4, 을나3, 5에 의하면,[redacted]세무서장이 J에게 L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를 통지한 날(법정기일)은 아래와 같고, 이는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17. 11. 2.보다 먼저이므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1-14

최초납부기한	세 목	고무청구 체납세액	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일	납부통지서 송달일	입증자료
2016-03-31	부가가치세	56,967,730	2016.11.25	16.11.29	을 제3호증 (납부통지서 송달내역)
2016-05-31	법 인 세	89,127,790	2016.11.25	16.11.29	
2016-11-25	법 인 세	1,474,490	2016.11.25	16.11.29	
2017-04-05	부가가치세	1,824,930	2017.09.29	17.10.13	
2017-04-30	부가가치세	10,656,390	2017.09.29	17.10.13	
2017-08-01	법 인 세	8,885,620	2017.09.29	17.10.13	

을나2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J은 L 주식회사 대한 지분 70%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로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, [redacted]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J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,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그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군, [redacted]시에 대한 소 및 피고 [redacted]국에 대한 소 중 130,412,29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[redacted]